

대일본 유제품 수출시 동물검역 주의 필요

○ 유제품 동물검역 신규 시행

- 일본 동물검역소에서는 기존에 생유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동물검역을 2017년 11월 1일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유제품에 대해서도 동물검역을 실시하게 됨으로 향후 대일수출시 주의가 필요시 됨
- 검역을 확대하게 된 개정 배경에는 일본으로의 축산 전염병 침입 방지와 일본 축산물의 수출촉진에 있음
- 유럽과 미국으로의 수출에 필요한 검역협상과 관련 국제기준 및 타 국가와 동등한 수준의 검역체제 구축 필요성에 의해 금번 개정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

○ 주요 시행내용

- 기존의 <우유>를 포함한 <유제품 전체>가 검역대상이 됨
- 수입, 수출품 모두 일본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이 필요
- 대일본 수출시에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<검사증명서>가 필요
- <리스트 국가>와 <리스트외 국가>에 따라 수속내용에 차이가 있음

○ 검역 대상 품목

- 추가로 검역대상이 되는 유제품은 아래와 같음 (숫자는 HS코드)

■ 0401 (우유, 크림 등)

- * LL 우유(<원유 및 유제품 성분규격 등에 관한 법령>이 규정하는 <상온보관 가능품>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) 제외

■ 0402 (우유, 크림 등)

- * 무가당 연유, 무가당 탈지연유 제외

■ 0403 (버터밀크 등)

- * 발효유(요구르트 등), 유산균 음료 제외

■ 0404 (모유 등)

■ 0405 (버터 등)

- * 버터오일, 기(Ghee 반액상 버터) 제외

■ 0406 (치즈 등)

- * 프로세스 치즈 제외

■ 3502.20, 3502.90 (밀크알부민, 농축모유 등, 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는 것)

- * 분리 정제된 α -락트알부민 제외

■ 2309.10, 2309.90 (생유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함유하는 사료 및 펫 푸드 등)

- * <건조 펫 푸드> 및 <우제류 동물 이외의 동물사료용으로, 소매 판매되는 것(주1) 중에서 원료(주2)의 중량에 함유되는 생유 및 유제품 비율이 50% 미만이면서 상온보존이 가능한 것> 제외

주1) 수입 후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봉지에 나눠 담아 소분하는 것을 포함

주2) 첨가한 물은 원료로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음

- * 상기 중 통조림, 병조림, 레토르트 (용기 충전후 가열 멸균 처리된 것 한정)제품은 제외함

○ 검역 절차

- 대일 수입 시에는 <리스트 국가(생유 및 비가열 유제품의 대일수입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)>와 <리스트 외 국가(생유 및 비가열 유제품의 대일 수입을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국가)>에 따라 가축위생조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함
- 리스트 외 국가에서 유제품을 수입할 경우,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성 처리공정을 거쳐야하는 조건이 필요함(한국은 리스트외 국가에 해당)

수입 시 검역 절차
※가축 전염병 예방법 실시규칙에 지정된 항구 혹은 공항을 통한 수입 필수
①동물검역소에 수입검사 신청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 등의 제출
②도착 시 수입검사 동물검역소 또는 지정 검역 장소에서 검사
검역 통과시 → ③수입 검역 증명서 교부
④통 관

※출처 : 일본 농림수산물성 동물검역소 http://www.aff.go.jp/aqs/topix/dairy_products.html

시사점

일본으로 유제품 및 관련제품을 수출시에는 해당 상품이 동물검역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서 일본 현지 도착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주의가 요망됨

유제품으로 판정시에는 사전에 국내 검역검사본부에서 발행하는 동물검역증을 구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시 됨으로 향후 관련제품 수출업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